

EU 탄소국경세 시행, 합의안 내용 및 기업의 준비 사항

삼일 ESG Platform | January 2023

몇 달 간의 협상 끝에 22년 12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제품군에 대해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적용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非 EU)에서 규제가 엄격한 국가(EU)로 물품을 수출할 때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입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시범 기간(2023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에는 EU로 수입되는 CBAM 대상 제품의 온실가스(Greenhouse Gas, 이하 "GHG") 발자국에 대해 분기별 보고(직접 및 간접 배출 포함)를 수행하며, 2026년 1월부터는 수입자가 수입 시 CBAM 인증서 구매 후 해당 내역을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탄소배출 거래제)의 탄소 가격과 연동될 예정입니다.

매년 상승하는 ETS 탄소 가격 및 CBAM 제품군의 확대 가능성 고려 시 결국 한국 기업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일회계법인

1. 대상 제품군

2021년 7월 CBAM 초안이 공개된 이후 CBAM 대상 제품군 및 범위에 대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며, 수소를 포함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6개 제품 군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원료/재료로서 철망간 등과 일부 철강제품(screws, bolts)이 추가됨으로써 생산단계의 전후방(upstream/downstream)으로도 대상품목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탄소 내재배출량 산정 시 직접 배출 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게 되며, 2030년까지 석유화학 제품군(Polymers/Chemical 등)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집행위원회 입법안(2021. 7)	EU 의회 도입안(2022. 6)	잠정합의안(2022. 12)(*)
적용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철광석 등 원료제품 및 스크류, 볼트 등 철강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암모니아
배출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배출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배출 및 간접배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배출 및 간접배출 포함

(*) 탄소집약적이고 배출량 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산업 및 부문부터 시행, 집행위는 CBAM 시범기간(23~25년) 중 downstream 품목,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을 CBAM 대상 품목에 추가할지 검토할 예정

2. 보고의무

시범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EU로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 제품에 포함된 GHG 배출량에 대해 분기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는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CBAM 보고 의무는 EU 당사자에게 있지만, 온실 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보고를 위한 준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CBAM 보고에는 제품당 GHG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수입자(EU 사업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수입 제품에 포함된 GHG 배출량 및 연간 CBAM 신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의 주간 평균 탄소 가격과 연동**됩니다. 현재 EU ETS 가격 CO2 톤당 85유로를 초과합니다. **지난 2년 동안 CO2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1년 초에 가격은 CO2 톤당 약 34유로였습니다.



3.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실제 배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실제 데이터를 적용하나, 사용할 수 없는(또는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각 공정에 대해 EU 하위 10% 성능 현장에서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기본 배출 데이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공신력 있는 배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의미하며, 하위 10% 공정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더 큰 비용 부담과 Risk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국가의 동향

유럽연합은 CBAM 과세 합의안에 도달한 후 탄소 감축을 위한 제도와 관련된 세제에 대해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탄소세 관련 법안인 CCA(Clean Competition Act)의 초안이 2021년 7월에 마련되었으며, 이후 2022년 7월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CCA와 CBAM의 차이는 CCA는 더 CBAM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제품 군이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며 (천연가스, 석유, 철강, 유리, 종이 및 기타 25개 산업군), 제안된 탄소 가격은 톤당 55 USD로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EU CBAM의 잠정 합의안을 시발점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 관련 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takeaway

✓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점

- 수출에 대한 CBAM의 잠재적 재정적 영향(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 현재 사업의 가치사슬 (Value Chain) 점검 및 변경
- 마케팅 전략에 대한 잠재적 효과 분석
- 탄소 집약도가 낮고 기존 제품보다 "친환경적"인 경우 사업적 기회 - 업계 평균의 Benchmarking Study
- 업데이트 또는 개발이 필요할 수 있는 탄소 배출 보고 준비
 - 탄소배출 측정 방법론, 내부 프로세스 개발, 탄소배출 산정을 위한 IT 시스템
 - GHG 발자국 추적 및 CBAM 보고

✓ 10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보고 요건에 대비하기 위해 권장되는 즉각적인 조치

- 수출물품의 상품코드(CN Code)가 CBAM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
- 현재 GHG(탄소배출) 계산 방법론 검토 및 평가
 - 제품당 CO2 배출량에 대한 세부 정보 및 방법론이 CBAM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 온실가스 산정을 위한 IT 시스템 진단(있는 경우)
- 위의 단계를 고려하여 CBAM 보고 준비를 위한 로드맵 개발
 - GHG 계산 방법론의 개발 또는 업데이트, 내부 프로세스, IT 시스템 선택 및 구현(생산자 및 EU 보고 주체 모두)
- 자료 구비 수준에 대한 전략 (수입자에게 생산공정 등을 비롯한 기업의 비밀이 노출되는 Risk 고려)



Let's talk

김홍현 Partner
hong-hyeon.kim@pwc.com
02-709-3320

소주현 Partner
so.juhyun@pwc.com
02-709-8248



PwC Korea ESG Platform

ESG Platform Leader

스티븐 강 Partner
steven.c.kang@pwc.com
02-709-4788

Assurance

권미엽 Partner
miyop.kwon@pwc.com
02-709-7938

이진규 Partner
jin-kyu.lee@pwc.com
02-3781-9105

Tax

심수아 Partner
sooa.shim@pwc.com
02-3781-3113

김홍현 Partner
hong-hyeon.kim@pwc.com
02-709-3320

Deals

곽윤구 Partner
yun-goo.kwak@pwc.com
02-3781-2501

서용태 Partner
yong-tae.seo@pwc.com
02-3781-2340

Consulting

윤영창 Partner
youngchang.yun@pwc.com
02-709-3354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 2023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